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2.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93호, 2005. 12. 31. 개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정·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용어 정의 개정(안 제2조제2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2007.1.1.시행)의 개정으로 감량의무 사업자를 법령에 의거 조례에 명시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객석 면적의 규모가 250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발췌 별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발췌 별첨)
「식품위생법」(발췌 별첨)

나. 개정조례안 : 붙임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은 250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6조제3호" 를 "제6조제1항제5호" 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제6조제3항제4호" 를 "제6조의3제4호"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6조제3항제4호" 를 "제6조의3제4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명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함 폐기물관리법 개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제1항제5호**---------- 1.----------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2 ~ 4 (생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생략)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제6조의3제4호** ---------- ---------- ---------- ---------- ---------- ------.	